

#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

2016년 2월 11일 제정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 처무 규정(이하 “처무규정”이라 한다.)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며,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라 칭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직원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통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처무규정 제6조의 직원에 적용된다.

**제4조(조직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1 이상을 외부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, 사무처 직원 중 총무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되, 특별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1회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직원 채용을 위한 고시 및 전형에 관한사항
2. 직원의 승진에 관한사항
3. 직원의 해임에 관한사항
4. 인사 정책 수립에 관한사항
5.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회장이 지시한 사항
6. 기타 인사 관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6조(운영)**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.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5.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6.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유지하여야 한다.
7. 위원회의 위원·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, 진술내용, 기타 승진임용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7조(진술권 부여)** 위원회는 의안에 관계되는 피 대상으로 하여금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심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.

- 제8조(심의)** ① 위원회의 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거나 특별한 학식,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심의 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심의, 결정된 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.
  - ③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인사 사항은 이 사회의 재심에 부의할 수 있다.

## 부 칙 <2016. 2. 11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